LG화재 매직카플러스
개인용자동차보험

LG화재 매직카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LG화재 매직카개인용자동차보험과 동일

LG화재 매직카플러스개인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

- 목 차 -

1. 납입방법관련 특별약관

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2)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3)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4) 보험료 자동이체납입 및 자동갱신 특별약관
5) 보험계약 자동갱신약정 특별약관

2. 운전자한정관련 특별약관

1)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2) 운전자연령 만24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3) 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4)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5)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6) 기명피보험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7) 운전자확대 단기특별약관

3.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

1) 대인배상Ⅰ 일시담보 특별약관
2) 형사합의지원Ⅲ 특별약관
3) 사고처리지원금보상 특별약관

4. 자기신체사고관련 특별약관

1) 자동차 상해 특별약관
2) 레이디(Lady) 특별약관
3) 레이디(Lady) Ⅱ특별약관
4) Couple 특별약관
5) Silver 특별약관
6) 자녀사랑 특별약관
7) 간병비지원 특별약관
8) 병실료차액보상 특별약관
9) 지정진료비보상 특별약관
10) 안전벨트착용 추가보상 특별약관
11) 주말상해 위로금추가보상 특별약관

5.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관련 특별약관

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2)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특별약관

6. 자기차량손해관련 특별약관

1) 차량수리비 확장 특별약관
2) 자기차량손해Ⅱ 특별약관
3) 자기차량손해 추가보상 특별약관
4) 대차비용 특별약관
5) 레포츠용품 담보 특별약관
6) 중고차가격 하락(격락) 손해보상 특별약관

7. 기타 특별약관

1)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2) 뉴매직카서비스 특별약관
3) 보행중 가족상해 특별약관
4) 대중교통상해 특별약관
5)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1. 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보험증권 기재의 회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합니다)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 안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3. 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1)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2) 위 '(1)'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3)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1)' 및 '(2)'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6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2. 계약 후 알릴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4. 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3.(2)'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5. 보험계약의 부활

(1) 이 특별약관 '3.(2)'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2) 위 '(1)'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1-2)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3. 사고카드 계약

(1)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2) 위 '(1)'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1-3)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1. 적용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지정은행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 납입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2. 보험료의 자동납입

(1)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회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납입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료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 '약정이체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3) 위 '(2)'의 약정이체일은 보험청약서상에 열거된 이체가능일자 중에서 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를 자동이체납입할 경우의 초회보험료 약정이체일은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책임개시일자의 이전의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4) 지정은행계좌의 이체가능 금액이 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않습니다.

3. 분할보험료의 납입유예 및 납입최고

(1) 회사는 분할보험료가 약정이체일에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약정이체일로부터 〈별표〉의 기간을 더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유예기간 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에 대해서는 납입유예기간이 없으며, 책임개시일자 이전까지 초회보험료의 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약정이체일에 분할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이체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위 '(1)'의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10일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를 합니다.

(4) 납입유예기간 말일까지 분할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 말일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4.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지정은행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 납입유예기간 계산시 가산기간

납입방법 \ 미납입보험료		2회보험료	3회보험료	4회보험료	5회보험료	6회보험료
비연속 2회납						1개월
연속납	2회납	4개월				
	3회납	2개월	4개월			
	4회납	1개월	3개월	4개월		
	5회납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6회납	1개월	1개월	2개월	2개월	3개월

(주) 비연속 2회납의 가산기간 1개월은 2회보험료 납입유예기간 계산시 가산기간을 말합니다.

1-4) 보험료 자동이체납입 및 자동갱신 특별약관

1. 적용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지정은행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 납입하기로 하고, 이 보험계약 보험기간 만료일(이하 '이 계약 만료일'

이라 합니다)을 보험기간 시기로 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2. 보험료의 자동납입

(1)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회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납입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료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 '약정이체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3) 위 '(2)'의 약정이체일은 보험청약서상에 열거된 이체가능일자 중에서 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 '4.'에 의한 자동갱신 계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회보험료를 자동이체 납입할 경우의 초회보험료 약정이체일은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책임개시일자 이전의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4) 지정은행계좌의 이체가능 금액이 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않습니다.

3. 분할보험료의 납입유예 및 납입최고

(1) 회사는 분할보험료가 약정이체일에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약정이체일로부터 〈별표〉의 기간을 더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유예기간 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 '4.'에 의한 자동갱신 계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회보험료에 대해서는 납입유예기간이 없으며, 책임개시일자 이전까지 초회보험료의 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약정이체일에 분할보험료가 이체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이체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위 '(1)'의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10일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를 합니다.

(4) 납입유예기간 말일까지 분할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 말일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4. 보험계약의 자동갱신

(1) 갱신계약은 이 특별약관 '5.(3)'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이 계약 만료일에 이미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2) 위 '(1)'의 갱신계약의 조건은 이 계약 만료일 현재 유효한 계약조건과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 계약 만료일 30일전까지 갱신계약 내용의 변경을 통지한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5. 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

(1) 보험계약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이 계약 만료일 이후 도래하는 약정이체일까지 자동이체 납입하여야 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 약정이체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 만료일로부터 30일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3) 갱신계약 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책임개시일자로부터 소급하여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납입유예기간 안에 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이 특별약관 '2.'에 의거 분할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인배상Ⅰ 및 대물배상의 보험료는 초회보험료에 포함됩니다.

6. 갱신계약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중의 사고

(1)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안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다만, 사고발생일 현재 갱신계약 내용과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유효한 다른 자동차보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위 '(1)'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지체없이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7. 계약 후 알릴 의무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지정은행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보험계약자가 이 계약을 자동갱신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 계약 만료일 20일전까지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8. 자동갱신 부적용 통지

회사가 이 계약을 자동갱신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 계약 만료일 30일전까지 보험계약자의 증권상 주소로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계약의 자동갱신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 납입유예기간 계산시 가산기간

미납입보험료 / 납입방법		2회보험료	3회보험료	4회보험료	5회보험료	6회보험료
비연속 2회납						1개월
연속납	2회납	4개월				
	3회납	2개월	4개월			
	4회납	1개월	3개월	4개월		
	5회납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6회납	1개월	1개월	2개월	2개월	3개월

(주) 비연속 2회납의 가산기간 1개월은 2회보험료 납입유예기간 계산시 가산기간을 말합니다.

1-5) 보험계약 자동갱신약정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 보험기간의 만료일(이하 '이 계약 만료일'이라 합니다)을 보험기간의 시기로 하여 이 계약 만료일 현재 유효한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갱신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고 이 보험계약 연간보험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특약보험료(이하 '특약보험료'라 합니다)를 이 보험계약 당시에 미리 납입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2. 보험계약의 자동갱신

(1) 갱신계약은 이 계약 만료일에 이미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2) 보험계약자는 이 계약 만료일로부터 30일(이하 '납입유예기간'이라 합니다)안에 미납입보험료(갱신계약의 연간보험료에서 특약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3) 보험계약자가 납입유예기간안에 위 '(2)'의 미납입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갱신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3. 납입유예기간중의 사고

(1) 회사는 납입유예기간안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만, 납입유예기간안에 책임개시되는 유효한 다른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위 '(1)'의 경우 보험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의 미납입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특약보험료의 환급

이 계약 만료일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하거나 ⑰ 보험계약의 소멸과 보험료의 환급 '2. 보험료의 환급' 규정에 의하여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 환급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특약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1)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21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21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⑩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⑪ 자기신체사고', '⑫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⑬ 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⑩ 배상책임', '⑪ 자기신체사고', '⑬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21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1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2) 운전자연령 만24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24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24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

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⑩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⑪ 자기신체사고', '⑫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⑬ 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⑩ 배상책임', '⑪ 자기신체사고', '⑬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24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4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3) 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26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⑩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⑪ 자기신체사고', '⑫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⑬ 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

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⑩ 배상책임', '⑪ 자기신체사고', '⑬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26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26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4)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및 ⑥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를 말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⑩ 배상책임', '⑪ 자기신체사고', '⑬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5)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⑩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⑪ 자기신체사고, ⑬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6) 기명피보험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 1인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⑩ 배상책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⑪ 자기신체사고, ⑬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7) 운전자확대 단기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운전자연령 만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운전자 연령 만24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또는 운전자 연령 만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이하 '운전자 한정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 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운전자 한정 특별약관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한정한 경우에도 이 약관에서 정한 보상책임이 발생하는 기간동안은 운전자 한정 특별약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1) 대인배상Ⅰ 일시담보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⑩ 배상책임(대인배상Ⅰ)'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⑱ 보험계약의 승계' '1.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의 규정에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동안은 그 자동차를 보통약관 '⑩ 배상책임(대인배상Ⅰ)'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3. 보상내용

(1) 회사는 보통약관 '⑩ 배상책임(대인배상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2) 회사는 위 '(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양도된 피보험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등록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

②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 대인배상Ⅰ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

③ 보통약관 '⑤ 보험기간'의 「대인배상Ⅰ」 계약 성립시 설정된 보험기간의 마지막 날 24시 이후에 발생한 손해

(3) 위 '(1)'에 의하여 회사가 보상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불량할증을 양수인에게 적용합니다.

4. 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1) 회사는 이 특별약관 '3.'에 의해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에 대하여는 단기요율로 계산한 해당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양수인은 위 '(1)'의 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3-2) 형사합의지원Ⅲ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⑩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이 모두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내(북한지역을 포함)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해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매 사고마다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해자가 사망하여 형사합의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1,000만원을 사망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동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로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7급 이상의 상해를 입어 형사합의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300만원을 부상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때에는 변호사보수 등 방어비용으로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판결에 의하여 벌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벌금지원금을 지급합니

다. 다만, 피해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벌금지원금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나.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내지 3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 500만원

다.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4급 내지 7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 : 300만원

(3) 동일한 사고로 전항의 보험금을 두가지 이상 드려야 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이를 합친 금액을 드립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전쟁, 변란, 폭동, 그밖의 소요나 이와 비슷한 사변으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때

②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때

③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사고가 생긴 때

④ 운전자가 싸움, 자살 또는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때

⑤ 운전자가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때

⑥ 운전자가 자동차를 범죄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⑦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⑧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중 사고가 생긴 때

⑨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던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⑩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해자가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인 경우와 피해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무면허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조종)의 금지중에 있을 때에 운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음주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상기 1 또는 2 의 **운전**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⑤ 며느리 및 ⑥ 사위를 말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4. 대위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 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단서)】

1.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2조(통행구분) 제 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제57조(횡단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5조(자동차 등의 속도) 제 1항 또는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 19조(앞지르기 방법) 제 1항·제 20조(앞지르기 금지시기)내지 제20조의 3(끼어들기의 금지) 또는 제 56조(갓길통행금지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 21조(철길건널목 통과)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 24조(보행자 보호)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 40조(무면허운전등의 금지) 제 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 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또는 도로교통법 제 80조(국제운전면허증에 의한 자동차 등의 운전)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 41조(주취중 운전금지) 제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 42조(과로한 때등의 운전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 12조(통행구분)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2조(통행구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 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 35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3-3) 사고처리지원금보상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⑩ 배상책임(대인배상Ⅱ 및 대물배상)이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⑩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규정에 의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거나 다치게 하거나(이하 '대인사고'라 합니다)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이하 '대물사고'라 합니다) 입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회사가 지급책임을 지게 되는 때에는 사고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사고처리지원금으로 기명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지급보험금의 계산

(1)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사고처리지원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인사고로 남을 죽게 하였을 때에는 100만원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부상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인사고로 남을 다치게 하여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8급 이상의 상해를 입은 때에는 20만원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부상급수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③ 대물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50만원을 초과하는 대물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0만원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위 '(1)'의 사고처리지원금을 두 가지 이상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때에는 위 '(1)'에 의한 사고처리지원금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통약관 ⑩ 배상책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2. 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4. 대위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는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 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1)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11] 자기신체사고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11] 자기신체사고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험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지 급 보험금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비용	-	공제액

①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합니다)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② 위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대인배상Ⅰ(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과 자동차상해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수가 실제 손해액(용어정의③)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다만, 공제액이 음(-)의 수치인 경우 '0'으로 산정합니다.

공제액	=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자동차상해 보상액	-	실 제 손해액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다.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용어정의⑥의 1)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라.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 받은 금액

마.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4) 위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포함하여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이 약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한 액수로 합니다.

(5)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해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⑭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4) 자기신체사고'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

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의 범위

(1)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⑩ 배상책임'의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② 위 '①'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용어정의④)

③ 위 '①'의 피보험자(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는 제외합니다)가 고용한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2) 위 '(1)'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피보험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4.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1. 보상내용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는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서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후,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2) 피보험자가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⑮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1. (3)의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대위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2)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위 '(1)'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2) 레이디(Lady)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11 자기신체사고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14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4) 자기신체사고'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여성인 기명피보험자

(2) 남성인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4.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에 의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하는 때에 피보험자

에게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수와 상관없이 입원기간 중 30일을 한도로 1일당 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성형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에 의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 부분에 성형을 요하는 경우에 1,000만원을 한도로 1cm당 10만원의 성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 건강회복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에 의하여 자궁이 파열되거나 또는 자궁을 둘러싸고 있는 골반골 골절시 100만원의 건강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4) 치아보철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에 의하여 치아에 손상을 입어 보철을 요하는 경우에는 1대당 10만원의 치아보철지원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3) 레이디(Lady)Ⅱ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⑪ 자기신체사고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책임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⑭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4) 자기신체사고'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

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여성인 기명피보험자

(2) 남성인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4.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형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에 의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 부분에 성형을 요하는 경우에 1,000만원을 한도로 성형지원금 실비를 지급합니다.

(2) 치아보철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에 의하여 치아에 손상을 입어 보철을 요하는 경우에 500만원을 한도로 치아보철지원금 실비를 지급합니다.

(3) 건강회복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7급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00만원의 건강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4) Couple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⑪ 자기신체사고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

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⑭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4) 자기신체사고'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4.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상위로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7급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매 사고에 대하여 1인당 20만원의 부상위로금을 지급합니다.

(2) 사망위로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매 사고에 대하여 1인당 1,00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합니다.

(3) 고도후유장해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고도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 매 사고에 대하여 1인당 1억원의

고도후유장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4) 가사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에 의하여 국내의료기관에 5일 이상 입원시 4일 초과일에 대하여 1일당 5만원의 가사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가사지원금은 1인당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가사지원금의 계산 : (입원일수 - 4일) x 5만원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고도후유장해**라 함은 피보험자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해등급 1급 내지 3급의 장해를 말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5) Silver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11 자기신체사고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14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4) 자기신체사고'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연령이 만50세 이상인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중 연령이 만 50세 이상인 자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⑤ 며느리 및 ⑥ 사위를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만 50세 이상**이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50세 이상을 말합니다.

4.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회복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7급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인당 50만원을 건강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2) 물리치료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7급 이상의 골절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인당 50만원을 물리치료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3) 뇌기능장애위로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내지 3급의 뇌관련 상해를 입은 경우에 1인당 1,000만원을 뇌기능장애위로금으로 지급합니다.

(4) 요양시설이용지원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해등급 1급 내지 3급의 고도후유장해 발생시 1인당 1억원의 요양시설이용지원금을 지급합니다.

(5) 장례보험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000만원을 장례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고도후유장해**라 함은 피보험자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해등급 1급 내지 3급의 장해를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골절이라 함은 외력의 작용이 강하여 뼈가 부분적 또는 완전히 이단된 상태를 말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6) 자녀사랑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11] 자기신체사고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 18세 이하의 자녀**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 18세 이하의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보통약관 ⑭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4) 자기신체사고'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4.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부상위로금

피보험자의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7급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매 사고에 대하여 1인당 100만원의 자녀부상위로금을 지급합니다.

(2) 자녀사망위로금

피보험자의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인당 2,000만원의 사망사고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단, 사망사고 위로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녀부상위로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자녀성형위로금

피보험자의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 부분에 성형수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매 사고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인당 1,000만원을 한도로 1센티당 10만원의 자녀 성형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안면부, 상지, 하지란 다음을 말합니다.
①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며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② 상지란 견관절 이하의 팔부분을 말합니다.
③ 하지란 고관절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하며, 둔부, 서혜부, 복부 등은 제외합니다.

(4) 후유장해 지원금

피보험자의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고도후유장해가 남은 경우에 매 사고에 대하여 1인당 1억원의 후유장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후유장해 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위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녀사망 위로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5) 자녀학자금(장제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자금으로 1사고당 2천만원을,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장제보험금으로 1사고당 2천만원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자녀학자금과 장제보험금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고도후유장해라 함은 피보험자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해등급 1급 내지 3급의 장해를 말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7) 간병비지원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⑪ 자기신체사고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11] 자기신체사고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 1급 내지 3급의 상해를 입고 국내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병인고용보험금」으로 보상합니다.

2.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14]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4) 자기신체사고'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11] 자기신체사고 2. 피보험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4. 간병인고용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매 사고당 30일을 한도로 입원 1일당 5만원의 「간병인 고용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8) 병실료차액보상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11] 자기신체사고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11] 자기신체사고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가 상해에 의하여 입원을 하였으나

기준병실보다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실료차액보험금」으로 보상합니다.

2.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⑭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4) 자기신체사고'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⑪ 자기신체사고의 2. 피보험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4.병실료차액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매 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 1인당 30일의 범위내에서 300만원을 한도로 입원 병실료의 차액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9) 지정진료비보상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⑪ 자기신체사고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⑪ 자기신체사고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가 상해에 의하여 국내의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때에 지정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 발생한 비용을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지정진료보험금」으로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요양기관을 말합니다.

2.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14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4) 자기신체사고'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11 자기신체사고 2. 피보험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4.지정진료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매 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 1인당 300만원을 한도로 「지정진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10) 안전벨트착용 추가보상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11 자기신체사고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보상책임 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11 자기신체사고에 의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사망한 피보험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에는 안전벨트착용 사망위로금으로 1인당 1,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2.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⑭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4) 자기신체사고'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⑪ 자기신체사고 2. 피보험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4.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4-11) 주말상해 위로금추가보상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⑪ 자기신체사고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⑪ 자기신체사고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사고가 발생한 때가 주말인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말사고 위로금」으로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주말**이라 함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가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를 말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⑭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4) 자기신체사고'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주말사고 위로금의 지급

(1)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매 사고당 지급하는 주말사고위로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위로금 : 회사는 [11] 자기신체사고에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매 사고당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② 부상위로금 : 회사는 [11]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매 사고당 20만원을 지급합니다.

(2) 사망과 부상이 동시에 발생하였을 때는 위 '(1)'에 의한 주말사고위로금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1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 또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10]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및 '[11] 자기신체사고'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통약관 '[11]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회사가 보상할 위 '(1)' 또는 '(2)'의 손해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보상할 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 경승합자동차 및 경·4종화물자동차간에, 다인승1종·2종승용자동차 및 3종승합자동차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②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⑱ 보험계약의 승계' '2. 피보험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⑭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대리운전자를 포함합니다)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5)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7)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

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8)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연령범위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5-2)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담보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⑫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다른자동차를 운전중(주차 또는 정차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생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를 멸실·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보통약관 ⑭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 '1. 일반면책사항 (3)의 ⑦', 2. 음주운전 관련 자기부담금 및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6)'은 다음의 ①로 대체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2) 회사는 1. 보상책임 내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다른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다만, 운전자를 한정하는 다른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운전가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1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승용자동차, 경승합자동차 및 경·4종화물자동차, 다인승1종·2종승용자동차 및 3종승합자동차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②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18 보험계약의 승계의 2. 피보험자동차를 다른자동차로 교체(대체)시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2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4. 보상한도

(1)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매사고시 지급하는 보험금은 다른 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3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매 사고에 대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6-1) 차량수리비 확장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⑬ 자기차량손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 ⑬ 자기차량손해 1. 보상내용 (2) ① 가.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미수선 수리비를 포함하며, 도난은 제외합니다.)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⑭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6) 자기차량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용어풀이〉

①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가입금액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보험계약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한 곳과 때의 실제 차량가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② 제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중 차량을 대체한 경우에는 대체차량의 대체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 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차량대체한 곳과 때의 실제 차량가액)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6-2) 자기차량손해Ⅱ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자동차, 경·3종승합자동차 또는 경·4종화물자동차로 보통약관의 ⑬ 자기차량손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보통약관의 ⑬ 자기차량손해는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① 타차 또는 타물체(용어정의⑦)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용어정의⑧)로 인한 손해

②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③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위 '(1)'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한번의 사고로 생긴 손해가 **전부손해**일 때에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손시 제반비용 보험금」으로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전부손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입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3)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 보험금	=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	+	비 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① 위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다.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을 쓴 경우 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라.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 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가입금액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보험계약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한 곳과 때의 실제 차량가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2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중 차량을 대체한 경우에는 대체차량의 대체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 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차량대체한 곳과 때의 실제 차량가액)을 말합니다.

②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나.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③ 위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4)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5)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인 경우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에 종료합니다.

(6)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합니다.

2.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⑭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6) 자기차량손해'에 의한 손해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4. 전손시 제반비용 보험금의 지급

한번의 사고로 회사가 보상하는 「전손시 제반비용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6-3) 자기차량손해 추가보상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⑬ 자기차량손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⑬ 자기차량손해에 의한 자기차량손해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추가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위 '(1)'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동차가 주행불능되었을 때에는 주행불능된 피보험자동차를 기명피보험자의 거주지(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를 말합니다) 근처의 정비공장이나 회사가 인정하는 장소까지 견인차등에 의해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원격지 사고시 차량운반비용 보험금」으로 보상합니다.

(3) 회사는 원격지에서의 사고로 위 '(1)'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임시로 숙박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가까운 호텔 등 유상의 숙박시설(거주시설을 제외합니다)에 임시로 숙박하는 1박분의 객실료(음식비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를 이 약관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임시숙박비용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4) 회사는 원격지에서의 사고로 위 '(1)'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합리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사고장소에서 거주지까지 귀택하기 위한 교통비를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귀택비용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 1. 보상내용에서 **원격지**라 함은 피보험자의 거주지로부터 30km이상 떨어져 있고 피보험자의 거주지와 시 또는 군의 경계를 달리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⑭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6) 자기차량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피보험자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다만, 「임시숙박비용 보험금」및 「임시귀택비용 보험금」규정에 있어 피보험자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정규승차용 구조장치에 탑승중인 자를 말합니다.

4. 원격지 사고시 차량운반비용 보험금의 지급

(1) 회사는 매 사고당 30만원 한도내에서 운반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을 「원격지 사고시 차량운반비용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위 '(1)'의 비용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영수증등을 제출받아 회사가 그 지출목적, 금액, 기타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인정한 것에 한정됩니다.

5. 임시숙박비용 보험금의 지급

(1) 회사는 매 사고당 10만원 한도내에서 임시로 숙박하기 위한 비용을 「임시숙박비용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위 '(1)'의 비용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영수증등을 제출받아 회사가 그 지출목적, 금액, 기타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인정한 것에 한정됩니다.

6. 임시귀택비용 보험금의 지급

(1) 회사는 매 사고당 10만원 한도내에서 귀택하기 위한 비용을 「임시귀택비용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위 '(1)'의 비용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영수증등을 제출받아 회사가 그 지출목적, 금액, 기타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인정한 것에 한정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6-4) 대차비용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자동차, 경·3종승합자동차 또는 경·4종화물자동차로 보통약관 ⑬ 자기차량손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⑬ 자기차량손해 1. 보상 내용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대체교통수단으로 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해당차종의 렌트카를 대여하는 때에 한하여 그 대여비용을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렌트카 대차비용 보험금」으로 보상합니다.

(2) 회사는 위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가 경승합자동차 또는 경·4종화물자동차인 경우에는 「렌트카 대차비용 보험금」을 「대체교통비용 보험금」으로 대체하여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자기차량손해에서 렌트카라 함은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연식, 배기량, 승차정원, 차의 형태 등이 유사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운행하는 대여자동차를 말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보통약관 ⑭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6) 자기차량손해' 의한 손해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3. 렌트카 대차비용 보험금 및 대체교통비용의 지급

(1) 피보험자동차가 승용자동차 또는 3종승합자동차인 경우
회사가 매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렌트카 대차비용은 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차종의 대여자동차 요금에 인정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며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일당 2만원에 인정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가 경승합자동차 또는 경·4종화물자동차인 경우
회사가 매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대체교통비용은 1일당 2만원에 인정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3) 렌트카 대차비용 및 대체교통비용의 인정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리 가능한 경우
30일을 한도로 실제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외국산 자동차로서 부품조달에 소요되는 기간과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수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인정기간에 넣지 아니합니다.

② 수리불가능한 경우 : 10일

③ 도난의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하며, 30일 이내에 도난 자동차를 찾은 때에는 도난 자동차를 발견한 날까지로 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6-5) 레포츠용품 담보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⑬ 자기차량손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음과 같은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적재중인 피보험자의 레포츠용품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다만, 레포츠용품만의 손해와 레포츠용품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레포츠용품**이란 골프용품, 스키용품, 낚시용품 또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7)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단,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은 제외)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한 때에 생긴 손해

(9) 피보험자동차를 운송하는 동안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10)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1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 피보험자동차를 빌어 쓴 사람 또는 피보험자동차에 관계되는 이들의 피용자(운전자를 포함합니다)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

(12)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외의 자가 운전중 사고로 인한 손해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무면허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조종)의 금지중에 있을 때에 운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음주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상기 1 또는 2 의 **운전**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이 특별약관에서 **마약 또는 약물 등**이란 도로교통법 제42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4. 보상한도 및 손해액의 결정

(1)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레포츠용품에 발생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 10만원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매 사고당 200만원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 및 특별약관 「자기차량손해의 적재물보상특별약관」에서 보상받는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 후 지급합니다.

5. 현물보상

회사는 레포츠용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 할 수 있습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6-6) 중고차가격 하락(격락) 손해보상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출고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승용자동차, 경·3종승합자동차 또는 경·4종화물자동차로 보통약관 ⑬ 자기차량손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13 자기차량손해 1. 보상내용에 의해 피보험자동차에 발생한 손해액이 보험가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전부손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14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6) 자기차량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용어풀이〉
1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가입금액**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보험계약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한 곳과 때의 실제 차량가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2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중 차량을 대체한 경우에는 대체차량의 대체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 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차량대체한 곳과 때의 실제 차량가액)을 말합니다.
3 이 특별약관에서 **전부손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3. 지급보험금의 계산

한번의 사고로 회사가 보상하는 「격락손해 위로금」은 50만원을 한도로 하며, 피보험자동차에 발생한 손해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5. 대위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7-1)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가 다인승 1종·2종승용자동차로서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 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보통약관 '⑭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1. 일반 면책사항'의 '(2)의 ⑤', '(3)의 ⑤', '(4)의 ⑨', '(5)의 ⑤' 및 '(6)의 ⑤'에도 불구하고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7-2) 뉴매직카서비스 특별약관

1. 서비스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회사에 요청할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긴급출동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이 특별약관에 있어 전 조의 서비스는 각각 다음의 정의에 의합니다.

(1) 긴급견인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사고 또는 고장으로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하지 못하여 수리를 위해 긴급견인을 필요로 할 경우에 1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단, 10km 초과거리는 건설교통부고시가격 기준으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비상급유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중 연료가 소진되어 운행이 정지된 경우 긴급운행용으로 휘발유 3ℓ/ 경유 5ℓ이내의 연료를 주유하여 드립니다. 다만,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가스충전소까지 견인하여 드리며, 10km 초과거리는 건설교통부 고시가격 기준으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밧데리충전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밧데리의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긴급출동하여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단, 밧데리 교환시는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4) 타이어교체서비스

타이어의 펑크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장난 타이어를 예비타이어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타이어수선은 제외하며 피보험자가 예비타이어가 없어 새 타이어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타이어의 가격을 실비로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5) 잠금장치해제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차량의 Key를 자동차 실내에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단,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는 제외됩니다.

(6) 브레이크/엔진/파워오일보충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브레이크오일, 엔진오일, 파워오일의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오일의 부족분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단, 브레이크오일은 1ℓ이내, 엔진오일은 2ℓ이내, 파워오일은 1ℓ이내에 한하며, 기준량을 초과하는 경우는 실비를 받고 보충하여 드립니다.

(7) 라지에타캡교환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주행중 부품불량 및 파손으로 엔진과열시 긴급출동하여 라지에타캡을 교환하여 드립니다.

(8) 브레이크등/전조등교환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중 브레이크등, 전조등의 전구의 고장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하는 전구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9) 윈도우브러쉬교환서비스

우천시 또는 눈이 오는 때에 피보험자동차의 윈도우브러쉬의 불량으로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출동하여 윈도우브러쉬를 운전석에 한하여 새 부품으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10) 휴즈교환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휴즈단락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때에는 휴즈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11) 오버히트(엔진과열)응급조치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주행중 오버히트(엔진과열)로 운행이 불가능시 피보험자동차를 응급조치하여 드립니다.

(12) 긴급구난서비스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가 자력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여 구난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긴급구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별도의 구난장비 없이 구난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료가 청구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라 함은 ① 2.5t 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②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한 경우 ③ 구난작업을 시작하여 견인고리 연결직전까지 소요된 시간이 30분을 초과한 경우 ④ 2500cc 이상의 국산차량 및 전 외제 차량을 구난한 경우 ⑤ 세이프티 로더로 구난한 경우를 말합니다.

(13) 부동액보충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주행중 부동액 부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할 때에는 부족분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14) 차량진단 서비스

피보험자동차의 차량진단을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 예약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30가지 주요항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차량진단 내역서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단, 보험기간중 1회에 한함)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30가지 주요항목**이라 함은 엔진오일, 밋션오일, 파워오일, 브레이크 액, 타이밍벨트, 팬벨트, 배터리, 스타트모터, 알터네이터, 플러그배선, 점화플러그, 클러치, 클러치실린더, 배기파이프, 소음기, 부동액(냉각수), 라지에타호스, 주차브레이크, 브레이크패드(라이닝), 에어컨벨트, 타이어공기압, 타이어마모, 예비타이어, 에어컨(히타), 헤드램프(안개등), 브레이크등, 워셔액, 와이퍼브레이드, 경음기, 실내등을 말합니다.

(15) 정비이력관리 서비스

회사가 지정한 정비업체에서 정비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리내역, 소모품 교환주기, 차량사항 등을 기록한 정비이력통장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16) 수리차량운반 서비스

고장으로 인해 피보험자동차를 회사가 지정하는 정비업체에서 수리할 경우, 작업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될 때에는 수리완료 후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로 운반하여 드립니다. 수리차량운반 서비스는 보험기간중 1회에 한하며, 소모품 교환 등 단순 수리의 경우는 제외됩니다.(단, 운반거리가 10km를 초과하는 경우 1km당 2,000원의 초과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며, 운반거리는 50km를 한도로 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 있어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위의 자를 말합니다.

4. 매직카서비스의 제한

회사는 긴급출동서비스중 (1) ~ (13)항의 서비스를 피보험자에게 5회에 한하여 제공합니다.

5.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서비스의 요청지가 견인차가 도착하기 어려운 도서지역(제주도나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은 제외)이나 산간지역 또는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긴급출동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7-3) 보행중 가족상해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⑫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내용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운행중인 자동차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포함하여 자동차에 탑승중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②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싸움, 범죄행위, 폭력행위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③ 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로 인하여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④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⑤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⑥ 피보험자가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상해를 입은 때

⑦ 자동차의 수리,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⑧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때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때에는 회사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가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및 ⑥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를 말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3)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동거중인 부모

(4)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동거중인 자녀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4.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

(1)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금은 1인당 2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24]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합니다.

① 대인배상Ⅰ(공제계약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합니다)의 보험금지급 기준에 의해 보상될 수 있는 금액

②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의 대인배상Ⅱ가 있을 때에는 이러한 대인배상Ⅱ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될 수 있는 금액

③ 보통약관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그러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금액

⑤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⑥ 피보험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3) 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해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7-4) 대중교통상해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⑪ 자기신체사고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교통승용구를 탑승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원의 교통상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기차, 전철, 지하철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3) 영업용 콜밴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영업용 콜밴**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밴형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운송사업을 하는 승객과 화물을 동시에 운송하는 승차정원 5인 또는 6인의 화물자동차를 말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사망한 때

② 피보험자의 싸움, 범죄행위, 폭력행위로 그 본인이 사망한 때

③ 피보험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로 인하여 그 본인이 사망한 때

④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⑤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⑥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⑦ 피보험자가 통상의 업무(교통승용구의 운전을 포함합니다.)로서 교통승용구에 탑승중 사망한 때

⑧ 피보험자가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사망한 때

⑨ 교통승용구의 수리,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때에는 회사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기명피보험자

(2)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3)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동거중인 부모

(4)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동거중인 자녀

4. 대위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 1] <신설 2000.8.23, 2002.5.24>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제6조의2관련)

1. 시내버스 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 이 경우 영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 후단의 규정에 의한 운행형태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

한다.

가. 시내좌석버스 :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행좌석형과 좌석형에 사용되는 것으로 좌석이 설치된 것

나. 시내일반버스 : 제7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좌석과 입석이 혼용 설치된 것

2. 시외버스 운송사업

중형 또는 대형승합자동차. 이 경우 영 제3조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운행형태에 따라 자동차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시외우등고속버스 : 제7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속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차량 총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28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

나. 시외고속버스 : 제7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속형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원동기 출력이 차량총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30인승 이상인 대형승합자동차

다. 시외직행 및 시외일반버스 : 제7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행형과 일반형에 사용되는 중형이상의 승합자동차

3. 택시운송 사업

승용자동차

4. 마을버스운송사업

중형승합자동차.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형 또는 대형승합자동차로 할 수 있다.

5. 전세버스운송사업

중형이상의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6인승이상의 것에 한한다.

6.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특수형 승합자동차 또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일반장의운송사업자동차 및 운구전용장의자동차로 구분한다.

7-5)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30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30세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⑩ 배상책임(대인배상Ⅰ 제외)', '⑪ 자기신체사고', '⑫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및 '⑬ 자기차량손해'에서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⑩ 배상책임', '⑪ 자기신체사고', '⑬ 자기차량손해'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30세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일 현재 만30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